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6. (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안자 : 조영덕 의원 외 4인
- 제안일 : 2020. 10. 20.
- 회부일 : 2020. 10. 20. (의안번호 : 20-148)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통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의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과 구민에게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조문을 점검하여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서류 제출 의무 규정 삭제
 - 제1호[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및 제2호(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자치법규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보고 및 검사)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20.10.15. ~ '20.10.19.)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u>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u>			<u><삭 제></u>
	<u>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u>			
	<u>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u>			<u><삭 제></u>
	<u>리보고서</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광역17개소, 기초 226개소 총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조례 7만9천건, 규칙 2만4천건을 일제조사한 결과 조례 1만 6614건, 규칙 3896건 총 2만 510건이 불합리한 조례로 조사 되었습니다.
- 정비 대상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23%,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가 20%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9%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0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하여 우리구 조례는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2호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 계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보고의 의무를 규정한 본 조항은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관계 법령**

1. 관계법령
2. 행정안전부 통보 우리구 정비대상 조례

[자료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12호, 2020. 7. 9., 일부개정]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33호, 2019. 7. 11., 일부개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10. 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자료2] 행정안전부 통보 우리구 정비대상 조례

연번	자치법규명	대상조문	문제점	개정사항	비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	법률의 위임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	해당조문 수정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주민이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연합회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 조직에 신고의무 및 기록·보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배할 소지가 있음.	해당조문 삭제	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과 다르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삭제	기획예산과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이므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음.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부분 삭제	기획예산과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5조	조례에서 그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 및 기산점으로 수정	재무과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 항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건으로 "50명 이상의 연서"라는 제한이 없어 상위법 위반	"50명 이상의 연서"라는 제한 규정 삭제	지역경제과

연번	자치법규명	대상조문	문제점	개정사항	비고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다르게 조례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해당 규정에서 제외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교통행정과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2 항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	삭제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 항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를 각급학교의 장에게 부과하고 있음	상위 법령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고서는 제출 대상에서 삭제	교육지원과
10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보건법위반과 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 제3조, 제5조	「지역보건법」 인용 법조항 개정사항 미반영	인용 법조항 개정하여 반영	의약과
		제4조제1 항	과태료 사전통지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함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규제행위 법」으로 수정	의약과
		제5조제4 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지체 없이 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반함	제5조제4항의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수정	의약과
		제7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함	준용 내용이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는 법령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	의약과